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7. 12. 13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0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 ('97. 12. 13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김 진 택

가. 개정이유

지방세법(1997. 8. 30법률제5406호) 및 동시행령(1997. 9. 대통령령제15489호)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입한 사항을 정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골자

- 납세완납증명처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. (안 제6조의2)
- 고지서를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의2)
- 지방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구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 (안 제14조)
- 재산세의 세율을 신설함 (안 제21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97. 8. 30.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 및 제188조 제6항과 대통령령 제15,489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된 내용을 동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12조의2 내용은 고지서통 송달함에 있어 채무공무원이 아닌 동직원등이 교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고 책임 소재 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,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포구 통·반장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4조 내지 안 제14조의4 규정은 97. 8. 30. 개정된 지방세법 제12절 각조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한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현행 제14조에 규정된 구세심의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나, 안 제14조의 4 제1호의 내용은 제5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21조의2 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50%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안에 신설하므로써 지역특성과 경제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산세율을 조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통·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 정무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"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" 라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지급안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인지?

- 답변요지(김진택 새무2과장) :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 계정조례안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겠고, 구체적인 수당지급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이 끝 시달될 것임.
- 질의요지(김성환 위원) : 반장이 송달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?
- 답변요지(김진택 새무2과장) :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시달되어야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(안) 의결할 것을 동의

6. 수정(안) 요지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'97. 12. 13. 정 만 직 위원외 1인
- 나. 수정이유 :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코자 함.
- 다. 수정일자 : "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"를 "연속하여 3회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"로 수정함 (안 제14조의4 제1호)

7. 심사결과 : 수정(안) 의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사항 : 수정(안) 별 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에 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'97. 12. 13.

제안자 : 총무재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코자 함.

2. 주요수정골자

- "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"를 "연속하여 3회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"로 함 (안 제14조의4제1호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4 제1호중 “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”를 “연속하여 3회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:1997. .

제 출 자:마포구청장

1.提案理由

지방세법(1997. 8.30법률제5406호) 및 동시행령(1997.9.대통령령제15489호)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主要骨子

가.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
(안 제 6조의 2)

나.고지서를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함
(안 제12조의2)

다.지방세법개정따라 조례에서 구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4조)

라. 재산세의 세율을 신설함(안 제21조의2)

3.關係法令

-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, 동법시행령제46조의3,
- 지방세법 제188조의 제6항

4.參考事項

가.예산조치:필 요

나.기 타: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997-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6조의2(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위임)구청장은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다만,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 할 수 있다.

제8조중 “영 제27조의2”를 “영제25조”로 한다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2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·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이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시행규칙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,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의2(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)①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,당연직 위원3명은 재무국장,세무1과장,세무2과장으로 하며,

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.

- 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
- 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- 3. 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
- 4.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
- 5.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
②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③ 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와 서기는 당해 세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제14조3(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) ①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⑥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1. 내무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

2.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⑦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(서울특별시장경유)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
- 2. 사실관계 및 현황
- 3. 관련법규와 쟁점사항

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

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4조4(위원의 해촉)구청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.

1. 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
2.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
3.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
4.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
5.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세율)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건축물

가. 주택: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율>
1,200만원 이하	(1,000분의3)
1,200만원초과 1,600만원이하	(1,000분의5)
1,600만원초과 2,200만원이하	(1,000분의10)
2,200만원초과 3,000만원이하	(1,000분의30)
3,000만원초과 4,000만원 이하	(1,000분의50)
4,000만원초과	(1,000분의70)

나.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(1,000분의70)

다.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: 그가액의(1,000분의6)

라.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(1,000분의3)

2. 선박

가. 고급선박:그 가액의(1,000분의50)

나. 가목 이외의 선박:그 가액의(1,000분의3)

3. 항공기: 그 가액의(1,000분의3)

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되기전 청구된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신 설>	제6조의2(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)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
제8조(허가등의 제한)구청장이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	제8조(허가등의 제한)----- 영제25조-----
1~4 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·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4조(구세심의위원회)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4조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
<p>②위원회 안건을 분장,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	<p>②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
<p>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</p>	<p>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.</p>	<p>③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④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.다만,보궐로 선임된 위원장,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④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</p>
<p>⑤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⑤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
<p><신 설></p>	<p>제14조의2(적부심사위원회의구성등) ①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, 당연직 위원3명은 재무국장,세무1과장,세무2과장으로하며, 외부위원은 다음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<신설></p>	<p>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.</p> <p>1.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</p> <p>2.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3.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</p> <p>4.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</p> <p>5.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</p> <p>②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③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와 서기는 당해세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3(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) ①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
<신설>	<p>⑤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.</p>
	<p>⑥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.</p>
	<p>1. 내무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</p>
	<p>2.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
	<p>⑦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(서울특별시장경유)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</p>
	<p>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</p>
	<p>2. 사실관계 및 현황</p>
	<p>3. 관련법규와 쟁점사항</p>
	<p>4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</p>
	<p>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4(위원의 해촉)구청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.</p>	
<p>1. 마포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</p>	
<p>2.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</p>	
<p>3.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</p>	
<p>4.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</p>	
<p>5.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</p>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제21조의2(세율)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																				
	1.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
	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0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과세표준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율></td> </tr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(1,000분의3)</td> </tr> <tr> <td>1,200만원초과 1,600만원이하(1,000분의5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,600만원초과 2,200만원이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1,000분의10)</td> </tr> <tr> <td>2,200만원초과 3,000만원이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1,000분의30)</td> </tr> <tr> <td>3,000만원초과 4,000만원 이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1,000분의50)</td> </tr> <tr> <td>4,000만원초과</td> <td>(1,000분의70)</td> </tr> </table>	<과세표준>	<세율>	1,200만원 이하	(1,000분의3)	1,200만원초과 1,600만원이하(1,000분의5)		1,600만원초과 2,200만원이하			(1,000분의10)	2,200만원초과 3,000만원이하			(1,000분의30)	3,000만원초과 4,000만원 이하			(1,000분의50)	4,000만원초과	(1,000분의70)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(1,000분의3)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초과 1,600만원이하(1,000분의5)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초과 2,200만원이하																					
	(1,000분의10)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초과 3,000만원이하																					
	(1,000분의30)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초과 4,0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
	(1,000분의50)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초과	(1,000분의70)																				
	나.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(1,000분의70)																				
	다.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(1,000분의6)																				
	라.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(1,000분의3)																				
	2. 선박																				
	가. 고급선박: 그 가액의(1,000분의50)																				
	나. 가목 이외의 선박: 그 가액의 (1,000분의3)																				
	3. 항공기 : 그 가액의(1,000분의3)																				